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590
---------	------

2017년 2월 20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2월 29일, 이해경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2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7년 2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해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서 교통약자를 “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보호 및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안내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,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대상을 ‘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’에서 ‘교통약자’로 확대함.(안 제7조제2항제3호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구 조항 신설.(안 제18조)
-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보호 및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신설.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 예고

- 기 간 : 2017. 1. 5 ~ 2017. 1. 12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) : 수정 동의
 - 안 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: 삭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 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하고,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■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 확대(안 제7조제2항제3호 관련)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(이하 “증진계획”이라 한다) 내용 중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을 현행 “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”에서 “교통약자”로 확대하는 것으로

동 조례의 상위법인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』에서 “교통약자”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,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¹⁾하고 있다는 점에서

특정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동편의정보 제공 대상을 전체 교통약자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, 관련 법령 및 동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■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8조 관련)

- 안 제18조(위원회 운영)는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’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

증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업까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바, 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임

1)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■ 교통약자 안내방송 규정 신설 등(안 제19조 관련)

- 안 제19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는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으로

이는 법 제5조2)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노력하도록 한 사항 및 현재 버스·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이 시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

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해 질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바, 이는 조례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란 규정이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정리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를 삭제함(안 제18조)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-
- 2) 제5조(교통사업자 등의 의무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·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·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59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0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란 규정이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정리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”를 삭제함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1. ~ 2. (생략)

3.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

4. (생략)
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서울특별시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시장-----

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시장-----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시장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시장-----

② 시장-----

③ 시장-----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시장-----

② 시장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(개정안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5.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생략)

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생략)

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시장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-----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전화, 서면 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-----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-----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(개정안과 같음)

1. (개정안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-----

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시장

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19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7조(예산의 확보)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”을 “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강구해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전화,서면”을 “전화, 서면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”를 “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<u>법 제2조제1호</u>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-----.</p>
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 <u>서울특별시</u>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서울특별시</u>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	<p>제7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) ① <u>서울특별시</u>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</u>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서울특별시</u>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교통약자의 특성을 감안한</u>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</p>
<p>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<u>서울특별시</u>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<u>서울특별시</u>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서울특별시</u>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</p>

②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생략)

② 시장-----
-----.

③ 시장-----
-----.

제10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시장-----

----- 마련하여야 --.

② 시장-----

-----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-----

-----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전화, 서면 -----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) ① -----
-----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.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.

<신 설>

② 시장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-----

-----.

제17조(예산의 확보) 시장-----

-----.

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 대중교통 운영 기관장 또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